●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2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신동원 의원(32명 찬성)

나. 제 안 일 : 2025. 3. 31.

다. 회 부 일 : 2025. 4. 2.

라. 의안번호 : 255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2025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 사용하도록 신규로 추가함.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출산)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 업무 특성상 매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업무가 몰려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사용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수권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일반적인 '행정규칙'으로 보여짐.

○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1항에서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새롭게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제29조(특별휴가) 제17항 본분 중 항 번호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15항에"를 "제16항에"로 변경한다.

나. 주요내용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을 추가한다. (안제29조(특별휴가) 제2항)

○ 제17항 본분 중 "제15항에"를 "제16항에"로 변경한다. (안제29조(특별휴가) 제17항)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한다. (안 별표 5)

○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5회, 사용기한을 1년 이내로 규정함. (안 별표 5)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갈음

(3)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4. 5.(토) ~ 2025. 4. 9.(수)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보류 또는 수정가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지난 '25년 2월 11일 개정·시행된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기한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임.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29조)

○ 안 제29조는 기존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하여 미숙아 출산시에는 그 기간을 100일으로 확대하는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 미숙아는「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말하며,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개정안 제29조제2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제2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미숙아를 출산한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 ⑯ (생 략)	경우에는 100일, 한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⑯ (현행과 같음)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의 확대(안 별표5 개정)

○ 안 별표5의 개정사항은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사항을 반영하면서, 그 사용 기한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에서 **120일 이내에서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1년 이내에 5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복무규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되었음.

- 개정 방식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규정한 조례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5]를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단에 비고 표시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개정안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r><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5</td></tr>
<tr><td>자녀</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r>
<tr><td rowspan="2">출산</td><td>배우자</td><td>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td></tr>
<tr><td>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td><td>1</td></tr>
<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
<tr><td rowspan="6">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td><td>3</td></tr>
<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3</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able>
</td><td>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r><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5</td></tr>
<tr><td>자녀</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r>
<tr><td rowspan="2">출산</td><td>배우자</td><td>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td></tr>
<tr><td>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td><td>1</td></tr>
<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
<tr><td rowspan="6">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td><td>3</td></tr>
<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3</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able>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td></tr>
</table>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2항에 따른 것임.

- 복무규정은 소속 공무원의 결혼·출산·입양·사망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부여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 출산휴가 외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규정함.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는 그간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사용 기한과 사용 방법 등을 복무규정 및 복무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해 왔으며,

-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휴가지침에서 상위법령인 복무규정에 따라 최근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출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다태아의 경우 150일 이내, 5회)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1)]

1)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휴가지침(인사담당관-1652, 2025.3.11. 관련) 참조.

4 휴가 도입 취지를 고려한 개정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안은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한이 120일로 제한되어 경우에 따라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2] 초저출산 시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을 확대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기회를 더욱 넓게 보장하고자 함.

○ 다만, 복무규정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진 점과 출산 휴가 부여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측면에서 민간에서부터 도입된 후 공무원 조직에도 반영되었음.[3]

○ 특히 본인 출산 외에 '배우자' 출산 시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u>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u>하기 위한 목적으로,

- 자녀 출산 후 산부인과 검진, 출생신고, 예방접종 등 산모와 자녀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며, 그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가 함께 하며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임.[4]

○ 이러한 목적으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 15일에서 25일)하여 출산 직후 돌봄 지원을 위한 휴가 기간을 2배 늘린 것임.[5]

---

2) 다만 경조사 휴가 활용의 어려움 우려에도,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현황은 평균 97%이며 ' 24년 하반기 사용률도 100%에 이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 23~' 24년 14명의 대상자가 모두 사용했으며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 사용자가 60% 이상임.

3) 지난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우선 도입되었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2010년 개정되어 배우자의 출산 시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되었음.

4) 제418대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24.9.), 39면 이하 참조.

-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에서 120일(다태아 15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다태아 2회)에서 총 3회(다태아 5회)로 확대하였음.[6]

○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확대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이 지난 '24.9.26. 개정되어 '25.2.23.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진된 것임.[7]

○ 이렇듯 상위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현재, 개정안이 복무예규 상 확대된 사용기한에 더해 1년의 사용기한과 분할 횟수도 5회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사용 현황과 경조사휴가 취지를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복무규정과 복무예규는 다태아 출산의 경우를 구분해 다태아의 경우 더 확대된 휴가일수과 사용기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들 차이점에 대한 것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

5) 2010년 초기 도입 시 5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종전까지 10일(다태아 15일)로 점차 확대 적용해왔음. 출산 뒤 한달 동안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휴가일수를 20일로 2배 늘린 것임.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아빠 육아 참여 늘린다…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656>.

6) 이들 개정사항은 이미 2025년 2월 11일 공포·시행되어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2025.2.11.)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17호, 2025.2.11.) 개정에 대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며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소속 지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음(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097호(2025.2.10.)).

7) 추가적으로 이번 2025.2.11.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상 세부 사항이 정비되었음.

5	복무규정 개정 사항의 적용례 검토(부칙 관련)

○ 개정안은 별표5의 개정사항인 20일(다태아 25일)의 휴가와 1년의 사용기한에 대해 부칙 적용례에서

ⅰ) 개정 복무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복무예규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ⅱ) 복무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즉, ’25.2.11. 기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무예규상 사용기한인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24.11.12. 이후 배우자 출산) 개정조례안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년의 기한 내에 5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 ’25.2.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일로부터 1년의 기한 내에 5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이들 대상자는 상위법령인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례 대상자와 동일한 자들로 개정 복무규정의 적용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복무예규와 다른 기한을 적용하게 되어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게 됨.

○ 복무규정에서 특별휴가에 관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이 없어 복무예규와 달리 사용기한 등을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복무규정은 개정 부칙을 통해 확대된 개정규정의 적용례 판단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무예규상 사용 기한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 밖에 신규 개정사항인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세부사항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통해 규정하며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을 요청하였음.[8)]

- 복무예규는「지방공무원법」및 복무규정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

- 그간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예규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통일적으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용해 오며 행정통일을 기해온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6 종합검토

○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한을 1년으로 확대해 저출산으로 심각한 사회분위기 속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 사용상 효율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상위법령인 복무규정은 최근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면서 그 사용기한에 관한 적용례는 종전의 복무예규의 사용 기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며,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을 요청한 점에 유의해야 함.

---

8)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097(2025.2.10.)호.

○ 의회사무처 관련 부서에서도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일반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절한 사용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 복무예규의 개정으로 확대된 경조사 휴가 기간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보류 또는 수정(예규의 범위 내)이 필요하다는 의견임.[9)]

- 한편,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고려하여 의회사무처는 소속 공무원들이 경조사 휴가를 사용 기한 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며, 각 부서에서는 직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결론적으로, 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가 갖는 특수성(출산 직후의 산모 및 자녀 돌봄), 제도 운용상의 혼란 최소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출산 경조사 휴가 사용 기한의 개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제330회 운영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복무규정과 복무예규의 범위 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의되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10)]

<조례안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9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	제2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미숙아를 출	제29조(특별휴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9) 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 회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사과의 입장(서울특별시 인사과-6141(2025.2.11.)호)은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육아휴직 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목적이 출생 직후 배우자와 신생아 자녀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사용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120일, 예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사용기한을 정한 후 향후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조례안과 같음)
③ ~ ⑯ (생 략)	③ ~ ⑯ (현행과 같음)	③ ~ ⑯ (조례안과 같음)
⑰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5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가	⑰ 제16항에 ----------제16항 제1호----------	⑰ (조례안과 같음)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 ---------- ---------- ---------- ---------- ---------- ---------- ---------- ---------- ---.	
⑱ (생 략)	⑱ (현행과 같음)	⑱ (조례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5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table>
<tr>
<td>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r><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5</td></tr>
<tr><td>자녀</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r>
<tr><td rowspan="2">출산</td><td>배우자</td><td>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td></tr>
<tr><td>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td><td>1</td></tr>
<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
<tr><td rowspan="7">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
<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3</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able>
</td>
<td>
규」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r><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5</td></tr>
<tr><td>자녀</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r>
<tr><td rowspan="2">출산</td><td>배우자</td><td>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td></tr>
<tr><td>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td><td>1</td></tr>
<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
<tr><td rowspan="7">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
<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3</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able>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td>
<td>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r><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5</td></tr>
<tr><td>자녀</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r>
<tr><td rowspan="2">출산</td><td>배우자</td><td>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td></tr>
<tr><td>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td><td>1</td></tr>
<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
<tr><td rowspan="7">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
<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5</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3</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able>
<비고 삭제>
</td>
</tr>
</table>

담당 연락처	02-2180-7688

10)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호)

[참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25.2.11.시행) 주요 내용 및 복무예규 상 개정 출산 경조사 휴가 사용기한 적용예시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2.11. 시행	①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②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11. 시행	③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분할사용 가능횟수	○ **1회(다태아 2회)**	○ **3회(다태아 5회)**
	④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세부사항 규정		<신 설>	○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복무예규 상 개정 출산 경조사 휴가 사용기한 적용예시(행정안전부 예규 제317호, 92면 이하.)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120일 또는 15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5. 2. 11.)에 따른 적용 예시 >

■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규정 시행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과 개정 규정 시행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20일, 다태아 25일)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개정 예규에 따른 횟수(3회, 다태아 5회)에서 종전 예규에 따라 나누어 사용한 횟수를 공제함

< 예 시 >

① 개정 규정 시행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에 있는 경우
-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5일 사용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15일(다태아 20일) 추가 사용 가능
-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10일(다태아 15일) 사용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10일 추가 사용 가능

② 개정 규정 시행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째 되는 날이며, 휴가 사용일 10일째인 경우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10일(다태아 15일) 추가 사용 가능

③ 개정 규정 시행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경과한 시점인 경우
-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5일 사용 : 추가 사용 불가
-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10일(다태아 15일) 사용 : 추가 사용 불가